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90
----------	-------

제출년월일 : 2019. 07.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민간투자심사위원회와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통합·운영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구성(안 제3조) (개정)

○ 지역대표 ⇒ 지역대표, 민간투자분야 전문가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19. 6. 7. ~ 6. 27. (제출된 의견 없음)

2)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 동의

3)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 원안 동의

- 4)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개선의견 있음
 - 제3조 제1항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성별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여 반영함.
- 5)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2019. 7. 9.)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3조제3항 중 “지역대표”를 “지역대표, 민간투자분야 전문가”로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생략)</p> <p>③ 위원은 안전행정국장, 복지교육국장, 도시환경국장, 교통건설국장, 감사담당관, 총무과장, 재무과장, 징수과장,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u>지역대표</u>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p> <p>④·⑤ (생략)</p> <p>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p> <p>② (생략)</p>	<p>제3조(구성) ① <u>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 <u>지역대표, 민간투자분야 전문가</u> ----- 사람이 ----- -----.</p> <p>④·⑤ (현행과 같음)</p> <p>제7조(간사) ① ----- ----- <u>1명</u> ----- -----.</p> <p>②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손미경 (☎ 3153-8513)